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vpasse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 410호 (여의도동, 동북빌딩)
(전 화) 02-761-7649

대 표 이 사 : 윤 종 업, 김 봉 기

담 당 임 원 : (직 책) 전 무
(성 명) 이 성 희 (전 화) 02-761-7648

작 성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유 아 름 (전 화) 02-761-7649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9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일시 사외이사 겸 일시 감사위원 선임 (사건번호:2018비합19)
2. 원고·신청인	신청인: 벨류파트너스자산운용(주) 사건본인: (주)아트라스비엑스
3. 판결·결정내용	신청인 측 추천 감사위원후보 기각
4. 판결·결정사유	결정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8. 06. 29.
7. 확인일자	2018. 07. 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8년 3월 26일 개최한 아트라스비엑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후보가 부결되 어 구성요건인 3명중 2명이 결원됨. 이에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거, 직무를 행할 일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명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미 부결처리 된 주현기 감사위원 후보를 선임함. (참고: 2018. 03. 27. 일시 사외이사 겸 일시 감사 위원 선임신청 소송)